

등록번호	여성가족과-11083
등록일자	2015.3.30.
결재일자	2015.3.30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출산다문화팀장	여성가족과장	복지문화국장
전진형	김순례	김선옥	03/30 이태묵
협 조			

2015년 「다문화 인식개선교육」 추진계획



서 대 문 구
여성가족과

2015년

「다문화 인식개선교육」 추진계획

관내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·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유아와 어린이들이 다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 글로벌사회 도래에 따른 문화적 갈등 해소 및 긍정적 인식도모에 기여하고자 함.

I 추진근거

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(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■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10조(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II 추진배경

■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‘동화’ 및 ‘사회화’에 치중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다문화에 대한 이질감 및 배타적 정서만 키우는 역효과 발생

■ 다문화가족 자녀 36.2%가 친구로부터 차별을 받아 친구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 가장 큰 사유로 작용하여 일반아동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시급

※ 출처 : 2012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실태조사

Ⅲ 세부 추진계획

- 기 간 : 2014. 4월 ~ 11월
- 대 상 : 관내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
- 장 소 : 해당 교육기관 교육실
- 방 법 : 역량을 갖춘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 전문강사가 교육기관 방문하여 교육 실시

■ 교육과정 및 내용

▶ 어린이집·유치원, 초등학교 1~3학년

- 해당국가 및 문화 소개
- 한국문화와 비교하여 알아보기
- 문화체험(전통놀이기구, 전통의상 체험 등)

구 분	일본	중국	베트남	우즈베키스탄
교육내용 (1회 1시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본 소개 • 전통놀이기구 체험 • 전통의상 체험 • 장난감 '칸다미' 만들기 (8세이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국 소개 • 중국전래동화 읽기 • 전통놀이기구 체험 • 전통공예 체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베트남 소개 • 베트남 국기 만들기 • 전통모자 만들기 • 베트남어로 동화책 읽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즈베키스탄 소개 • 문화체험(국기 색칠하기, 전통의상 체험, 우즈베키스탄 빵(논) 먹어보기 등)

▶ 초등학교 4~6학년, 중학교

-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
- 우정으로 하나 되는 세상
- 세계시민으로서 나의 비전 키우기

■ 강사현황

-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및 결혼이민자 출신의 다문화 강사과정 수료자
- 다문화 강사 관리 및 교육기관 파견
 - 어린이집·유치원, 초등학교 1~3학년 : 서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
 - 초등학교 4~6학년, 중학교 : 한국건강가정진흥원
- 국적별 강사 현황(서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)

계	일본	중국	베트남	우즈베키스탄
5 명	1 명	2 명	1 명	1 명

추진체계



IV 기대효과

- 다문화가족 아동 스스로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
- 다른 문화에 거부감 없이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어린시기의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으로 편견과 차별 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미래사회 구현

V 소요예산

■ 소요예산 : 금5,000천원

- 강사료(다문화가족지원센터) : 50천원×1시간×60회 = 3,000천원
- 강사료(건강가정진흥원) : 100천원×1시간×20회 = 2,000천원

■ 예산과목

- 여성가족과, 영유아의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, 건강가정 지원 및 저출산 대책, 다문화사회 통합지원, 일반보상금, 행사실비보상금

VI 행정사항

■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희망기관 신청 수시 접수 : 여성가족과

■ 다문화 강사관리 및 교육기관 파견 : 서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진흥원